

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. 10. 19 선고 2022가단1173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단체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미

담당변호사 김진모, 방인석, 하동규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10. 19.

주 문

-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22. 2. 22. 체결된 매매계약을 143,096,209원 및 이에 대한 2022. 7. 15.부터 2022. 10. 19.까지 연 8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.항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이디모데

[별지1]

부동산 목록

- | | | |
|-------------|--|-----------|
| 1. 전라북도 남원시 | | 답 633㎡ |
| 2. 전라북도 남원시 | | 답 1613㎡ |
| 3. 전라북도 남원시 | | 답 1341.5㎡ |
| 4. 전라북도 남원시 | | 답 2481.5㎡ |
| 5. 전라북도 남원시 | | 답 2063.1㎡ |
| 6. 전라북도 남원시 | | 답 1003.8㎡ |
| 7. 전라북도 남원시 | | 답 4819.7㎡ |
| 8. 전라북도 남원시 | | |
- ☐ 동
 [도로명주소] 전라북도 남원시
 위 지상
 일반철골구조, 경량철골구조판넬, 강판지붕 단층 등, 식물관련시설 2923.56㎡
 부속건물
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391.75㎡
 강파이프구조 강판지붕 단층 토크비사 194.84㎡
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76.5㎡
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44.5㎡
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20.25㎡
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5.94㎡
-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
| 9. 전라북도 남원시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
- ☐ 동
 [도로명주소] 전라북도 남원시
 위 지상
 일반철골구조, 경량철골구조판넬, 강판지붕 단층 등, 식물관련시설 2801.56㎡
-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
| 10. 전라북도 남원시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
- ☐ 동
 [도로명주소] 전라북도 남원시
 위 지상
 강파이프구조 판넬지붕 단층 우사 1,785㎡
 강파이프구조 판넬지붕 단층 토크비사 168㎡, 끝

[별지2]

청 구 원 인

1. 피보전채권의 존재

(1) 원고는 ‘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’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자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‘D기금의 관리기관’으로 지정되었습니다.*

*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

제4조(D기금) ①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A단체에 D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내지 ⑤ (생략)

제5조(관리기관) 기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는 A단체에서 취급한다.

(2) 소의 C은 아래 [표1]의 기재와 같이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의 E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,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C의 E조합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습니다(갑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포함, 각 신용보증약정서, 각 신용보증서, 각 대위변제증서, 각 상환조회표).

[표 3]

순번	대출일자	대출금액(원)	보증비율	대위변제일	대위변제금(원)	대위변제잔액(원)*
1	2021.04.07	20,000,000	100%	2022.07.15	21,338,004	21,268,635
2	2021.04.21	110,000,000	85%	2022.07.15	94,469,886	94,325,922
3	2022.07.20	30,000,000	90%	2022.07.15	27,502,539	27,501,652
합계						143,096,209

- * 대위변제금에서 원고가 C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료(= 보증기간 만료 전 보증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남은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)를 공제한 금액입니다.

(3) 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서 제11조에 따르면 원고가 E조합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, C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(연8%)*에 따른 손해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. ② 따라서 C은 원고에게 위 [표1]에 기재된 대위변제금 잔액 합계 143,096,209 원 및 이에 대한 2022. 7. 1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%의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.

- * 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3조의2는 “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해당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.” 라고 규정하고 있고, ②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서 제11조 제1항은 “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금액과 이행한 날부터 이행금액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정한 율에 따른 손해금을 상환하겠습니다.” 라고 규정하고 있고, ③ 관리기관인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연 8%입니다.

(4)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에 관하여

(가)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은 2022. 2. 22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하겠습니다)을 피고에게 매도하였고(갑 제4호증의 1 내지 10 각 등기사항증명서),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그 이후인 2022. 7. 15. 발생하였으나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.

(나) 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다76426 판결은 「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,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,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」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.

(다) 즉 ① 위 2011다76428 판결의 취지, ② 사해행위 당시 구상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다는 점, ③ 사해행위일인 2022. 2. 22.로부터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않은 2022. 7. 15. 대위변제가 이루어져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점, ④ 사해행위 일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F 명의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.

2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①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, 사해행위의 주관적인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, 채무자가 유일

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(대법원 96다2606,2613 판결), ② C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C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.

3. 피고의 악의

①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 수익자인 피고에게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점, ② C과 피고는 2021. 1. 14.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, ③ C과 피고의 주소지가 같고,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미 F 명의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는 점(갑 제4호증의 1 내지 10 각 등기사항증명서), ④ C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활용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, 피고의 악의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.

4.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

(1) 가액배상 사유

사해행위일인 2022. 2. 22. 이후인 2022. 3. 2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가액배상을 구하고자 합니다.

(2) 가액배상 범위

(가) 가액배상을 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.

(나)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15억 3,500만 원에 매수한 점에 비추어 볼 때, 선순위 채권액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클 것으로 보입니다. 이에 관하여 피고가 다툼 경우 소송 중 감정신청 등을 통해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.

(다) 또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,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(대법원 2003다19572 판결).

(마)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‘143,096,209원 및 이에 대한 2022. 7. 15.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8%의 이율에 의한 손해금’을 가액배상으로 구하고자 합니다.

5. 결어

위와 같이 원고는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, 그에 해당하는 가액의 배상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게 되었으므로,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끝>

